

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

납부자	성명						
	주소						
	사업장 소재지						
	상호 또는 명칭						
재 활용부과금의 내용							
연도(분기)	납부번호	납부기한	금액	미납 여부		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			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			
횟수	연도(분기)	납부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	미납 여부		
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 취소 금액 내용							
횟수	연도(분기)	납부번호	납부기한(분할납부기한)	금액(분할납부금액)			
징수유예 취소 사유							
귀하에게 제 호(20 . . .)로 통지한 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							